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(권향엽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72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30.

발 의 자 : 권향엽 · 김현정 · 김용만
전진숙 · 장종태 · 박해철
임미애 · 최민희 · 박지원
박용갑 · 김 현 · 박선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가정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,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,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최장 3년의 기간 내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할 수 있음.

그런데 가정폭력행위는 가족구성원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함에 따라 은폐되기 쉬워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반복적·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,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현행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한편, 현행법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임시

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임시조치의 연장은 판사가 직권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확대·연장하고, 임시조치 기간 연장 시에도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도 연장 요청 및 의견 진술 부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9조 및 제55조의3).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제5항 본문 중 “2개월”을 “1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두 차례만”을 “각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되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”로, “기간의”를 “1개월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4항(종전의 제11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⑪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, 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⑫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1항에 따른 임시조치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,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⑬ 제1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

한다.

⑭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0항의 신청 또는 제11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,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.

제55조의3제1항 단서 중 “2개월 단위로”를 “각 1년의 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임시조치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<u>2개월</u>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<u>두 차례</u>만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<u>기간의 범위</u>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⑥ ~ ⑩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9조(임시조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<u>1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각 1년의 범위</u>에서 연장할 수 있되 <u>중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</u>----- ----- -----<u>1개월의</u>----- -----</p> <p>⑥ ~ 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⑪ <u>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,</u></p>

<신 설>

<신 설>

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.

⑫ (생략)
제55조의3(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)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

임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⑫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1항에 따른 임시조치기간 연장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,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⑬ 제1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⑭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제10항의 신청 또는 제11항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의 취소,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.

⑮ (현행 제12항과 같음)
제55조의3(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) ① -----

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
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피
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
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,
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
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
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
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
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
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
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-----.

-----각 1년의 범
위에서-----.

② -----

-----5년-----.